

공표 전 통계 사전제공 금지



공표 전 통계 사전제공금지 원칙

공표 전에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하 사전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에 사전제공 가능(법 제27조의2)

▶ 적용대상 :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국가승인통계

영향력 행사금지 (법 제27조의2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¹⁾ 또는 작성된 통계²⁾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제1항)

사전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금지 (법 제27조의2제2항)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작성중인 통계 :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 포함
- 2) 작성된 통계 :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 포함



예외적으로 사전제공이 가능한 경우(제2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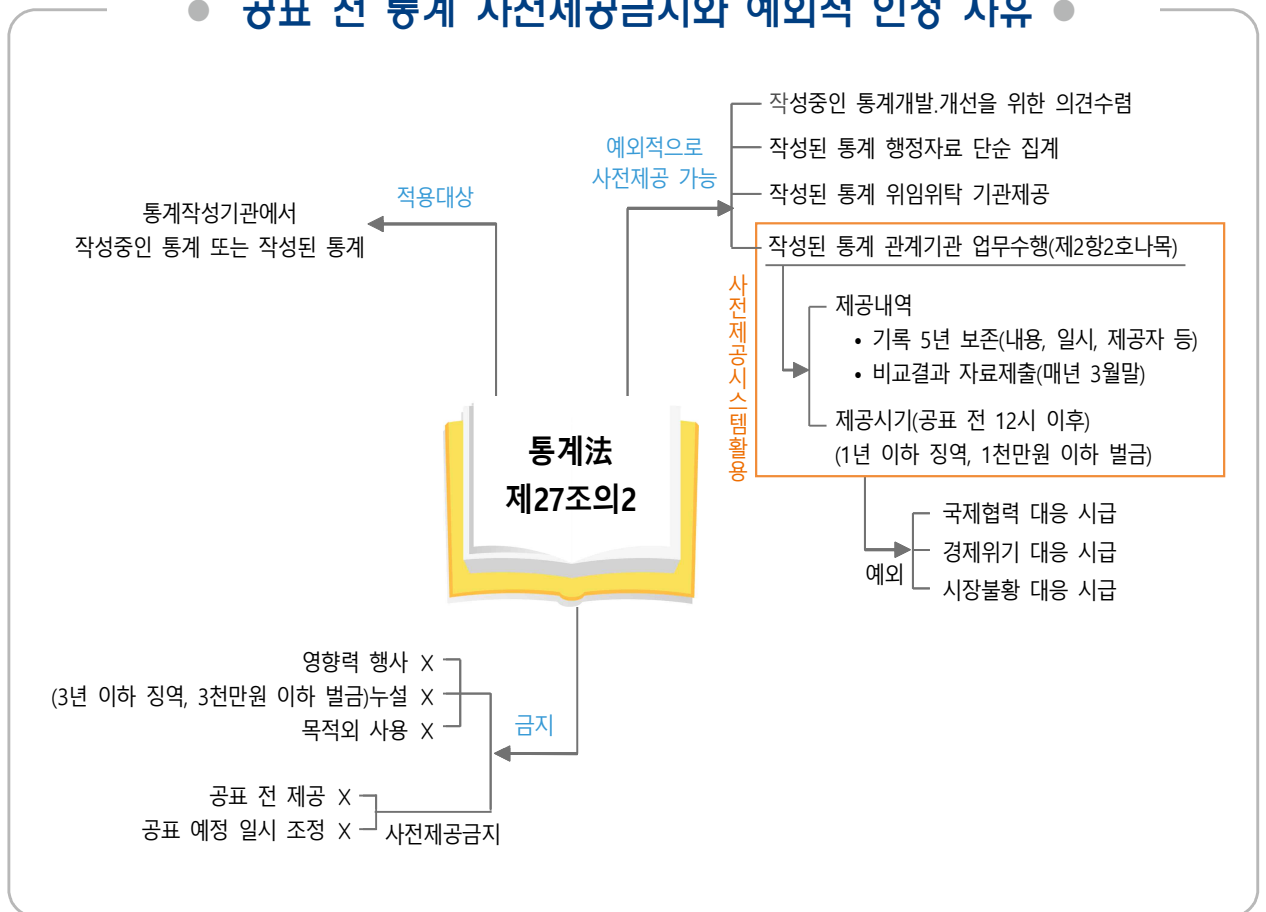
① 작성중인 통계의 경우

(제1호)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

② 작성된 통계의 경우

- (제2호가목)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 (제2호나목)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 제공 가능 ▶ **사전제공관리대상**
-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공표 전 통계 사전제공금지과 예외적 인정 사유 ●





사전제공관리

사전제공관리대상

(법 제27조의2제2항
제2호 나목)

사전제공요청방법

(시행령 제42조의2)

국가승인통계로서,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공표 전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전에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통계작성기관의 장(해당 통계생산부서장)에게 제출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최대 1년)
4. 제공받을 담당자

※ 사전제공요청 문서 본문 작성 예

가. 사전제공 요청 통계명 : 매월 ○○ 동향

나. 제공받을 기간 : 2025. 6. 1. ~ 2026. 5. 31.

다. 제공받을 담당자 : ○○과 ○○○ 사무관

라. 제공필요성 및 활용계획 :

- ○○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동향 작성통계의 사전제공이 필요.

사전제공의 시기

(시행령 제42조의3)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 제공 가능

※ (예외)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사전제공 가능한 경우

-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 (3) 질병·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 (4)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법 제39조제2항)

사전제공방법

-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전제공신청을 문서로 받은 후 제공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제공
 - ※ 사전제공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공 거부 가능
- 사전제공에 대하여 양 기관이 협의가 완료되면 사전제공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
 - 사전제공시스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 가능

사후관리업무

(법 제27조의2 제3항)

- 사전제공한 통계 내용(통계명), 제공일시, 제공자, 제공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
 - *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의2 서식) 이용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1조)

※ 사전제공시스템 활용 시 자동 관리

(법 제27조의2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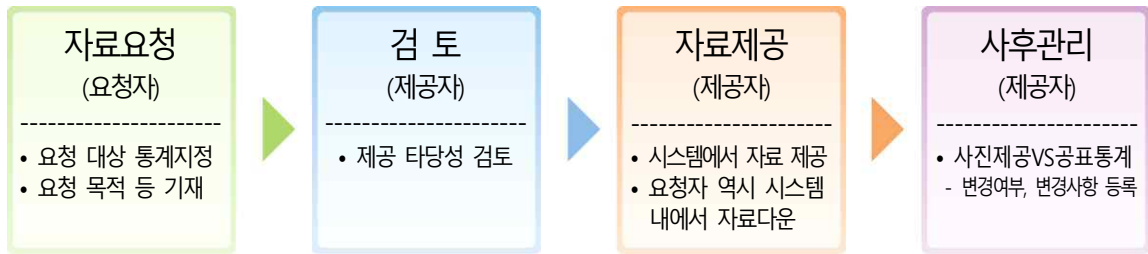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점검한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
 - *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통계법 시행규칙 별지12호의3 서식) 이용

(위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주의 또는 징계 조치(36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41조)

※ 사전제공시스템 활용 시

- 통계내용 및 공표(예정) 일시에 대하여 각각 변경유무와 변경사유를 등록

● 사전제공시스템 활용 시 사전제공 내역 관리 흐름도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http://www.narastat.kr/pms/index.do>」 → 「정책지원서비스」
→ 「사전제공관리」



님 환영합니다. [내업무함] [개인정보수정] [로그아웃]

통계승인 ▾ 품질관리 ▾ 통계기반정책평가 ▾ 통계수요 ▾ **정책지원서비스 ▾**

현황판

사전제공관리 · 사전제공 개요 · 사전제공 관리 (시스템) · 사전제공 관리 (이메일) · 제공이력 및 변경현황표

2026년 03월 현재 기준

국가승인통계



1,378 종

2026년

정기품질진단 대상



86 종

2026년

자체품질진단 대상



797 종

통계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세요?

**국가통계대행 및
통계작성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업무담당자 [인물 아이콘]

품질관리 [플러스 아이콘]

통계승인 [플러스 아이콘]

통계기반정책평가 [플러스 아이콘]

KOSIS운영 [플러스 아이콘]

☎ 도움안내 **042-471-5921**



통계책임관



통계수요(상시)



승인통계검색



작성승인



변경승인



'27회개년도
통계예산



정기품질진단



자체품질진단



품질개선 컨설팅
수요 신청



이용자용
통계정보 보고서



통합개선과제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행정자료우선활용
행정서식검색

<참고>

사전제공관리 관련 통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6. 8. 3.>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통계명	제공일시	제공한 자		제공방법	제공받은 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작성방법

1. 통계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한 통계명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표자료 제목과 통계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자료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은 기관명과 소속 부서(과)를 기재합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16. 8. 3.>

2000년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

연번	공표일자	통계명	통계내용		공표(예정)일시	
			변경여부	변경사유	변경여부	변경사유

작성방법

1. 통계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한 통계명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표자료 제목과 통계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자료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여부는 변경, 미변경 으로 기재합니다.